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-120호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(안건검토)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(안건검토)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서류전형 합격자

채용분야(근무부서)	합격인원	합격자(응시번호)
안건검토(행정심판국)	4명	강○○(안건-01), 서○○(안건-05), 안○○(안건-06), 이○○(안건-07),

※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

2 면접시험 일정

분야	대상	면접일시	대기시간	대기장소
안건검토	**서류전형 합격자**	**'26.11.24.(화) 14:00~**	**면접일 13:30까지**	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2동(국민권익위원회) 1층

※ 면접자 대기장소에 **대기시간까지 집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출입 시 담당자가 동행해야 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기해 주시고, 게이트 안으로 미리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**(담당자 동행 없이 이동금지)**

3 면접시험 준비물

<table>
<tr><th>제출방법</th><th>대상자</th><th>필요 서류</th></tr>
<tr><td>면접일
당일 소지</td><td>면접
응시자</td><td>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이메일
제출
(사전제출
서류)</td><td>공통
(필수)</td><td>①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: [붙임] 서식
② 법학석사 학위증(졸업증명서)</td></tr>
<tr><td>서류전형
합격자
(해당자)</td><td>
<table>
<tr><th>제출대상</th><th>제출서류(해당자)</th></tr>
<tr><td>안건검토
분야</td><td>㉠ (우대)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
- 우대요건 중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은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</td></tr>
<tr><td>가점
대상자</td><td>㉠ 법정가점(취업지원 가점) 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
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
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
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※ 공통 제출 서류와 해당자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하여 **하나의 파일로 제출**

4 제출기한 및 제출처

○ (제출기한) 2026. 11. 23.(월) 12:00

○ (이메일 제출) jhsw104@korea.kr로 제출

※ 이력서 상 우대요건 해당자는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5 최종합격자 발표

○ 2026. 11. 25.(수) 예정

※ 채용 서류 제출 등 채용준비를 거친 후 **'26. 12. 7.(월) 채용 예정**
(단, 채용준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※ 합격자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며,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
< 유의사항(필독) >

◆ **면접시험 준비물 중 사전제출 서류를 기한 내(11.23., 12:00)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**

◆ **면접에 불참하거나 대기시간까지 집합하지 않는 경우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**하므로, 응시자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이력서에 작성한 사항 중 제출서류에 의해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**

◆ 원활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는 응시자는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.

◆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◆ 또한 합격자 통지 후라도 **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
6 문의처

○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44-200-7185)

<붙임>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부패방지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1호)	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2호)	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